



포괄 이민개혁안

2013 년 6 월 27 일에 포괄 이민개혁안 (S.744)이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하원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이민개혁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많은 이들의 관심속에 지난 1 월 연방하원 공화당의 이민개혁 "원칙"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.

아직 초안에 불과한 "원칙"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 반영후 내용의 추가와 수정이 있을 전망입니다. 현재 발표된 하원 공화당의 이민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불체자 구제: 불체자들은 엄격한 신원조회 후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, 영어와 시민교육을 이수하면 합법 신분을 받을 수 있다.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등은 제외된다.
2. 합법이민 시스템: 현 가족이민 중심의 시스템에서 취업이민 위주로 전환 예고
3. 드리머: 드리머에 대한 조속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허용 입장을 밝혔지만 드리머의 자격을 규정했다.
4. 국경경비 강화: 국경경비와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. 만일 이민개혁법이 제정된다면 밀입국자 또는 over stay 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을 선언함.

5. 출입국 비자 추적 시스템: 출입국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입법요구

행정유예 (Deferred Action) 갱신절차

지난 2012 년 8 월 15 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16 세에서 30 세 사이의 불체자들에게 행정유예와 노동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. 2012 년 6 월 15 일부터 2012 년 8 월 15 일 사이에 행정유예를 승인받으신 분들을 필두로 행정유예 갱신절차가 시작됩니다.

갱신조건

1. 첫 DACA 신청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자
2. 2012 년 6 월 15 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
3.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학교 졸업 후 일을 하고 있는 자
4. 범죄기록이 없는 자

**** 행정유예 연장승인 전에 현 노동카드가 만료된다면 새로운 노동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없으며 그 기간동안 불법체류 기간을 누적하게 됩니다. 행정유예 갱신신청이 많을수록 이민국의 처리속도가 많이 지연됩니다. 해당 고객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신속하게 케이스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****

<p>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. Suite 1110 Los Angeles, CA 90010 Tel: (213) 385-4646 Fax: (213) 385-4040 Email: imin@iminusa.net</p>	<p>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Suite 300 Irvine, CA 92606 Tel: (949) 551-4646 Fax: (949) 242-4522 Website: www.iminusa.net</p>
--	---